

#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 로 불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불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정 수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정함(안 제7조).
- 나.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 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3조).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련 법률 폐지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